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B1019)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11월 24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개시일(2015년 4월 1일) 이후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KRW) ×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4년 12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KRW) × 100%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서 발행·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주1)}를 가진 기업

- 뛰어난 기술력 및 높은 브랜드 가치 등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또는 독점권을 가진 기업

주1)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 '해자'란 중세시대 성 주변에 적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든 도량을 의미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경제적 해자'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높은 진입장벽 및 확고한 경쟁우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인구 구조 및 소비 행태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과정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인구의 노령화 진행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 대용식) 등의 산업 내 기업

3. 새로운 산업(New Fashion)의 특성에 주목

- 플랫폼이 접목되면서 변화하는 산업 특성에 주목
- 중국 도시화 : 산업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새로운 패턴의 산업화 진행

4. 금융위기 이후 가계, 정부, 기업의 부 감소로 인하여 효율성 강조에 따라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물류효율성, 에너지효율성, Self-healthcare 등과 관련된 산업 내 기업에 주목
: 공장자동화 산업, 건강보조식품 산업 등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대상 국가	내용 ^{주1)}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물동량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에 긍정적일 것임 • 기업 배당 확대 정책으로 한국시장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홍콩 포함)	약 49백만명	\$ 28,739	3.68	2.29	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투자를 통한 고성장세는 줄어들고 있으나 소득이 증대되면서 민간 소비를 통한 매력적인 성장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13.6억명	\$ 7,572	9.30	7.65	7.70	
<p>※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RQFII 및 후 강통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상기의 제도를 이용한 투자 관련 위험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의 "나. 특수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아베 정권의 엔화 약세 전략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1.3억명	\$ 37,540	-0.45	1.46	1.52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면서 레버리지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나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통해서 중국의 고성장세를 누리고 있음 • IT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23백만명	\$ 21,572	4.19	1.48	2.09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배후로 하여 금융 시장 및 이들 시장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 등이 고성장세임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5.6백만명	\$ 56,113	6.06	2.50	3.85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등 상품 가격이 하향세이나 새로운 정권이 구조조정을 수행하였으며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시장임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2.5억명	\$ 3,404	6.49	6.26	5.7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성장세는 주춤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3천명	\$ 11,062	5.19	5.64	4.75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데타 이후에 소비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음 • 내수 시장의 규모 및 농촌 개발 지원 등을 감안하면 잠재력 있는 경제시장임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을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약 6.8천명	\$5,550	0.08	6.49	2.89
베트남	· 시장의 규모나 인구구조는 매력적이나 사회 인프라가 약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서 발전이 더딘 편이나 잠재력은 높음			GDP 성장을 추이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2011년	2012년	2013년
				약 9천명	\$2,093	6.24
필리핀	· 재정건전성이 높고 개인의 신용버블도 가장 낮아서 동남아시아에서 거품이 가 장 낮은 경제. 새로운 정권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일 경우 고성장 가능			GDP 성장을 추이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2011년	2012년	2013년
				약 1억명	\$2,913	3.66

주 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2) 1인당 GDP : 2014년 IMF 기준

3)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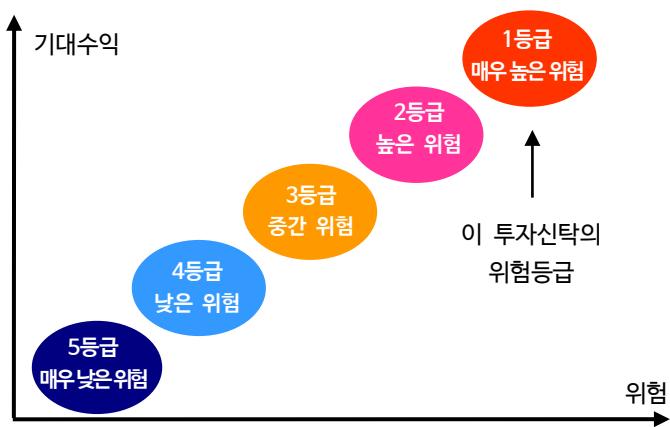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으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국가별 구성 및 비중, 업종 구성,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RQFII 및 후강통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 투자 방법에 따른 위험	후강 통제도	정의	‘후강통(沪港通)’은 상하이를 뜻하는 ‘후(沪)’와 홍콩을 뜻하는 ‘강(港)’, 그리고 두 곳을 소통시킨다는 ‘통(通)’을 조합한 단어로, 중국 내륙의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시장 간 주식거래를 상호 연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후강통은 홍콩의 투자자에게 상하이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후구통(沪股通)과 상하이 투자자에게 홍콩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강구통(港股通)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중국 내륙과 홍콩의 주식시장 사이에 거래 결제를 상호 연계시키는 시스템하에서 두 시장의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와 현지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대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	후강통제도는 거래시간, 결제방식, 공휴일, 거래단위 등 주문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현지 시장의 거래방식과 규칙을 따르나 투자대상종목, 총투자한도 및 일일투자한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일별 및 총액한도)에 따른 투자 제한으로 주식매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일정기간 중국 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증권거래소가 휴장일 때는 동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투자대상종목, 한도, 방식, 세제사항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	정의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이하 “RQFII”)란 중국 정부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안화를 이용하여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 원)에 달하는 한도를 부여받았습니다.
	위	이 투자신탁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 주식 등에 투자	

	험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고 RQFII 제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RQFII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국당국의 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환매 및 송금제한 등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위험		현재 중국 과세 당국은 중국본토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 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발표(2014.11.17)하였습니다. 따라서 후구통 및 RQFII 제도에 따른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제도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수수료 및 스왑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비용은 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p> <p>1)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2)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p> <p>3)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p>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주식형)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5 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단위 : 억원, 개 / 기준일 : 2015. 10. 31.)

성명	출생 연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홍익	1976년	책임 운용역 (부장)	16	6,334	<p>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p> <p>경력 03.01~05.05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5~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1팀</p> <p>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p>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주식운용 2 본부 1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 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C	Ce	S-P
펀드코드	B1021	B1022	B1023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펀드코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C	B1021	0.660	0.960	0.020	0.015	0.090	1.745	1.745	0.290
Ce	B1022	0.660	0.480	0.020	0.015	0.090	1.265	1.265	0.290
S-P	B1023	0.660	0.350	0.020	0.015	0.090	1.135	1.135	0.29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 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 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C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	567	976	2,1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83	567	976	2,117
Ce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	413	715	1,5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3	413	715	1,571
S-P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371	643	1,4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19	371	643	1,418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일 경우 15%)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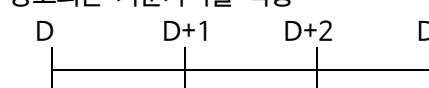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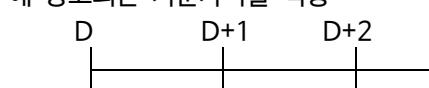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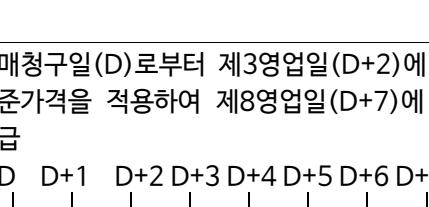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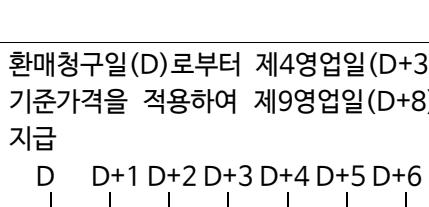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산정방법	(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17시 이전	오후 17시 경과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판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p>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